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The Ideologies and the Systems of the Healthy Family Act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교수 조희금**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부

교수 박미석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Professor : Cho, Hee-Keum

Division of Family & Child Welfare, Sookmyung University

Professor : Park, Mi-Seok

〈Abstract〉

Korean society recently realized the needs for a system that may effectively prevent and/or resolve different family problems caused by the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In order to carry out this objectives, The Healthy Family Act has been legislated and is to be enforced from the 1st of January, 2005. Legislating the law is a means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structure that may bring in the total welfare system centered around family, so as to promote healthy families in our society. This is also a land marking event that has shifted the paradigm from the welfare system focusing on individual protection to the total welfare system based upon family units.

Henc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ecific concepts of "healthy family," which is the goal of The Healthy Family Act, and thus to propose the objectives of the law by analysing the institutional system of it.

The Healthy Family Act, which consists of major 37 items of 5 chapters with supplementary provisions, aims at the five ideals as follows. The first is to promote the healthy family which is the basis of individual welfare and well-to-do society. The second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to provide total service system for family unit. The third is to establish the family value which supports gender-equality and democracy. The fourth is to reinforce the governmental support for independence and cooperation of family. And the fifth is to promote the in-advance and precautionary support for family problems. The law also includes administrative methods for Strong Families Center, different projects and programs for promoting healthy families, roles of Healthy Family Specialist and means to cultivating them, and the policies to specifically carry out the ideas of the law.

It is now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development of nation is based on the healthy families and to put much effort in carrying out the ideas and goals of The Healthy Family Act.

▲주요어(Key Words) : 건강가정(healthy families), 건강가정기본법(The Healthy Family Act), 건강가정기본법 이념(the ideologies of The Healthy Family Act), 건강가정기본법 체계(the systems of The Healthy Family Act)

* 본 논문은 한국가정관리학회 제35차 춘계학술대회에서(2004.05.22)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주 저 자 : 조희금 (E-mail : hkcho@daegu.ac.kr)

1. 서 론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법률로써 공포되었다. 1995년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에서 가정복지에 관한 중요성을 논의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가정학계를 비롯한 여성학계, 사회복지학계 등에서 가족, 가정에 관한 법률들을 앞 다투어 마련하게 된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가정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의식의 확산과 함께, 지금까지 가족이나 가정을 단위로 한 국가의 지원이나 정책이 부족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¹⁾.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사회가 겪은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는 가족의 변화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은 기존의 가족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고 가족형태는 다양화하는 등의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가족갈등, 가정폭력, 신용불량 및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 노인, 아동 등의 부양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가족원의 유기 및 출산기피 등 가족위기로 이어지면서 많은 가정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의 가족에 관한 국가정책이나 법은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가족구성원 각 대상별로 분리되고 분산되어, 가족이나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가정을 단위로 한 경우에도 요보호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머물러,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현대가정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가족 내에서

구성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생계를 위해 부부가 모두 취업해야 하는 도시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녀양육이나 노인부양을 해당가족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많은 가정은 해체되거나 붕괴될 수밖에 없고, 가정의 해체는 그 성원의 삶의 질 수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는 개별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지원을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발의되고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지만 이 법을 보는 시각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으로는 이 법이, 지금까지 요보호 개인중심의 사후치료적인 복지서비스 중심에서 가정 중심의 통합적이며 사전예방적인 복지서비스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반면, 유사한 법안을 준비했던 여성학계나 사회복지학계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지원 대상을 이원화 한다고 지적한다²⁾. 그러나 사회복지학계나 여성학계에서 제안했던 법안들의 취지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³⁾, 가정 및 가족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국가의 지원을 천명한 본 법에 대한 지적은 상호간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지향하는 건강가정의 개념은 무엇이며, 건강가정기본법이 어떤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법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고의 목적은 먼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추구하는 건강가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강가정의 개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그 법적인 체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체계를

1)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대한가정학회는 '지방화시대와 가정복지'라는 주제의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후 가정복지에 관련된 내용이 학술대회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했다(대한가정학회, 1995, 1996; 한국가정관리학회, 1999). 이와 함께 가정복지의 실천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정복지사'를 양성하게 되었으며 1998년 2월 처음으로 가정복지사가 배출되었다(한국가정관리학회, 1998; 조희금, 2000). 이런 노력에 힘입어 한국가정관리학회는 '가정복지기본법안'을 2001년 2월 9일 김성순의원 등 31명에 의해 발의(의안번호160621)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 후 별 진전 없이 국회계류 중에 있던 '가정복지기본법안'은 대한가정학회 주도로 전면 수정하여 2003년 7월 21일 박종웅의원 등 10명에 의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으로 새롭게 발의되었다(의안번호 162469). 또 보건복지부는 정부입법을 위해 2003년 8월 27일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3-97). 이에 대응하여 사회복지학계는 2003년 8월 22일 김홍신의원 등 11명이 '가족지원기본법안'(의안번호162559)을 발의하였다.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두 법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2003년 1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대안)'을 대안으로 제안하여 그날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4년 2월 9일 법률 제 07166호 '건강가정기본법'으로 공포되었다. 이와 함께 발의되지는 않았으나 여성학계에서는 여성부 후원으로 2003년 6월 '평등가족기본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2) 사회복지학계와 여성학계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발의 당시부터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서비스의 대상을 건강한 가족과 비건강한 가족으로 이원화하며, 건강가정이 정상가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가족의 변화를 가족위기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건강가정에 대한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데서 오는 지적이며, 본 고의 아래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건강가정을 건강/비건강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과 또 건강가정기본법이 생활공동체인 가정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학계의 의견으로는 김인숙(2003), 윤홍식(2004) 등과 여성학계의 의견으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2003)의 정책토론회, 한국여성민우회(2004)의 건강가정기본법진단토론회 등을 참조할 것.

3) '가족지원기본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이 법과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각 법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두 법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3).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체계를 만들고자 제안되어, 법으로 공포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건강가정의 개념

건강가정기본법은 핵심 개념인 건강가정을 가족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법 제3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법에 나타난 건강가정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래 건강이란 용어는 신체적 건강에 더욱 적합하고 익숙해져 있는 개념이다. 건강이란 ‘몸에 병이 없음’, ‘튼튼함’인데 WHO(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닌 신체적·정신적 행복(well being)의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유영주, 2004a, 538). 건강을 가족과 연결시킨 건강가족(strong family)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의 가족연구가 가정이 가진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건강하고, 행복하며,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개인을 위해 건강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Olson, 2004, 23)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건강가정에 대한 연구는 건강가족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밝히는데 집중하여, 건강가족의 특성을 가족의 응집력, 응동성, 의사소통의 정도로 측정하며, 건강한 가족, 균형 잡힌 가족, 회복력이 있는 가족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가족의 심리적·사회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유영주, 2004a, 530-534).

그동안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가족을 연구하는 하나의 관점인 건강가족적 관점(family strengths perspective)으로 새롭게 제시해온 Olson & DeFrain(2003, 16)은 가정의 건강성(b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hip, 2002)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모든 가정은 잠재적인 성장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건강성을 가지고 있다. 가정의 건강성은 가정의 구조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종종 건강한 가정을 이야기 할 때 내적인 가족의 기능이 아니라 외적인 가족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한다. 그러나 건강한 한 부모가족, 건강한 계부모가족, 건강한 핵가족, 건강한 확대가족, 건강한 동성애 가족, 건강한 양부모가족이 있다. 세상에는 가족구조에 관계없이 무수히 많은 건강한 가족이 있고,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유형의 가족구조에는 건강하지 않은 많은 가족들이 있다. 즉 사람이 살고 있는 가족의 유형만을 아는 것으로는 그 가족의 건강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일본 가정학회에서는 1979년부터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화로운 ‘새로운 가정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가정생활의 건전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가정생활의 건전도는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

한다. 즉,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 가운데 생활면에서는 종래의 생활양식의 붕괴, 또는 생활분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가정은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서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여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약의 정도를 가정생활의 건전도라고 부른다. 따라서 병리도는 이것에 대해 가정생활의 붕괴, 분해에 대처하는 기능상실의 강약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생활을 둘러싼 상황이 변화한 경우 가족원의 협력과 상호보완에 의해 그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높고, 가정생활의 안전성을 지키는 요소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문제에 따라서는 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단위에서 그 대처나 상호보완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는 가정의 자세(사회성)의 강약을 건전도로 파악한다. 즉 가정의 건강성이란 가정 내적으로나 사회에 대해 문제해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한다(일본가정학회, 1980, 151-152)고 하여 가정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가족이란 어떤 가족인가를 연구해온 유영주(2004b, 19-23)는 건강가족의 의미를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체계적 차원으로 대별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관계적 차원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사소통, 역할관계, 의사결정)이 균형을 유지하며 체계적 차원에서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여 사회, 국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한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우리나라 건강가족의 요인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즉, 가족원에 대한 존중, 가족원 간의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 그리고 정서적 인식처, 긍정적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 공유, 역할충실, 문제 해결 능력, 경제적 안정과 협력, 신체적 건강, 사회와의 유대 등이다. 건강가족을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은 서양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건강가족의 요소를 주로 가족체계 내적인 요인인 가족 간의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에 큰 비중을 두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것과 함께 가족원 간의 유대의식, 가족원의 역할충실, 가족원의 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정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본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가정의 개념은 이상의 건강가정에 대한 연구와 그동안 건강가정에 대해 논의된 내용(대한가정학회, 2003)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즉, 기본적으로 물질 토대인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가족 간에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관계를 가지며, 열린 대화가 가능하고 휴식과 여가를 공유할 수 있을 때, 가정 내적으로는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지며 가족역할을 공유할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면서 건강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활동에의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될 때, 나아가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유지하고 창조할 때, 우리는 그

가정이 건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건강가정의 기본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본토대 :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생활
- 2) 가족관계 :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열린 대화, 휴식과 여가의 공유
- 3) 가정역할 : 자녀의 성장발달지원, 합리적인 자원관리, 가족역할의 공유
- 4) 사회와의 관계 :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공동체형성에 기여
- 5) 가정문화 :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의 유지 및 창조

따라서 건강한 가정은 건강-비건강의 단순한 이분법적인 분류가 아니라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여러 요소들의 조합을 고려한 연속선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모든 형태의 가정은 어느 정도의 건강성은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가정은 어느 영역에서 부족함이 있다.

III.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건강가정기본법은 제2조(기본이념)에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정이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유지의 기초가 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이념에서는 법 전체를 대표하는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와 함께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법의 지향성을 가늠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법에 담긴 정신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추구하는 이념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이를 구현하는 법조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 둘째, 생활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강조와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셋째,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가치의 구현, 넷째, 가정의 자립과 협동 그리고 국가의 지원 강화, 그리고 다섯째,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등이다.

1.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

건강한 가정은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개인의 행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의 기본이 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개인-가정-사회의 상호작용적인 관점을 가진다. 종종 개인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정 공동체의 해체가 아닌 존립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유지가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과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안다. 즉 개인의 행복은 개인의 자유와 함께 건강한 가정의 유지에 포함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가정문제 증가로 인한 가족갈등, 가족해체는 사회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비용의 부담 역시 가정의 몫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건강한 가정이 어떻게 사회적 자본으로 기여하여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지 보여준다(이정전, 2003).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건강가정에 대한 사회복지학계나 여성학계의 지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법이 가정을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나누어 건강한 가정만을 보호하거나 또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은 결국 그 지원을 받는 가정을 비건강 가정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것과 건강가정이 혈연의 양부모로 이루어진 정상가정이테올로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점점 증가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⁴⁾. 이런 논의는 주로 본 법이 특정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거나 혹은 특정형태의 가족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본 법의 지원 대상에 대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가정의 개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가정은 생활단위인 가정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어서 특정한 가족형태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또 건강가정이 소위 정상적인 가족유형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에 대한 연구들(유영주, 2004b; 일본가정학회, 1980; Olson & DeFrain, 2003)이 분명하

4) 본 법이 정상가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비판의 주된 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정의)이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한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법이 사용한 가족의 정의는 현행 민법의 정의(第779條 (家族의 範圍) 戶主의 配偶者, 血族과 그 配偶者 其他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그 家에 入籍한 者는 家族이 된다)를 적용한 것이며, 만일 민법의 개정(호주제도 등의 폐지)으로 가족의 정의가 변경될 때는 마땅히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 정의를 문제 삼는다면, 이는 '가족지원기본법안'에서도(제3조 1항) 똑같은 가족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가족지원기본법안은 정의된 가족이외에 가족복지서비스를 받는 기본단위를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조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사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규정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더 강조하고 있다. 즉 본 법은 법의 명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제도로서의 '가족'보다는 생활공동체이며 생활단위인 '가정'을 강조한다. 생활공동체인 다양한 가정의 강조는 법 제 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을 강조한 것이나, 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부자가정, 노인 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그룹홈,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게 지적하고 있다.

본 법에서 건강가정이란 가족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한다(본 법 제3조). 나아가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본 법 제4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추구의 권리(헌법 제10조)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⁵⁾.

건강한 가정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의식주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저소득, 실업, 가계부채의 증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해체되는 가정의 증가는 가정의 건강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의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등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내용은 본 법의 제15조(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와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제15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1. 가족기능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증진 대책, 2.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과 문화 계승,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등이다. 이를 구체화한 건강가정사업으로 제21조에서는 1. 가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가정의 양립, 6.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9. 그 밖의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법 제22조에서 제33조 걸쳐 제시되어 있다. 즉,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을 지원해야 하고(제22조), 가족단위 복지를 증진하며(제23조), 가족의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고(제24조), 부양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족의 부양을 지원하며(제25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하도록 하며(제26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을 증진하며(제27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을 지원하며(제28조),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하며(제29조), 필요한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

견하며(제30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을 지원하며(제31조), 결혼준비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며(제32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도록(제33조) 규정하고 있다.

2. 생활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강조와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과 가정이라는 두 개념을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법령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생활공동체인 가정을 그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으나(유영주, 1999), 대체로 가족이 가족구성원에 초점을 둔 제도적인 단위를 강조하고 있다면, 가정은 생활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법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은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전통적·제도적의미로 사용되어 온 ‘가족’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확대되어 생활공동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가족을 실체라기보다는 실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족이 하나의 고정된 사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 안에서 끊임없이 구성, 해체되고 변모해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가족은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하나의 사고(아이디어) 혹은 사람들이 현실 안에서 투영시킨 ‘투사체(project)’라는 것이다(구부리움·홀스타인, 1997).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족정책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족’개념 자체가 매우 다양해져서 한부모나 단독가구, 무자녀가구 등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벗어나는 가족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이 증가하면서 가족정책의 대상이 되는 ‘가족’개념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장혜경 외, 2002). 또, 가족에 대한 이런 개념의 적용은 미국의 사회사업가협회(NASW)가 가족에 대한 정의에서 가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윤홍식, 2004, 78에서 재인용), 제도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생활의 개념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법에서는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에서 생활단위인 가정을 강조하고 있다. 즉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은 가족의 유지 및 발전과 함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를 위한 것이며, 기본이념으로 가정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생활공동체인 가정을 단위로 하는 것은 가족의 구조나 형태에 관계없이 생활을 영위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

5)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하략)

한 가족유형을 포괄한다. 생활단위인 가정에는 점점 증가하는 모·부자가정, 재혼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맞벌이 가정은 물론 그룹홈이나 자활공동체 등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생활단위인 가정은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력 재생산은 두 가지 차원에서 수행되는데, 현재의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과 미래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일상적 차원과 세대적 차원에서 각각 수행된다. 즉, 가정은 가사노동을 통해 매일 매일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며, 인간 그 자체를 생물학적으로 생산하여, 세대에 걸쳐 그들을 키우고, 유지하며, 살아있는 노동자로서 지속적으로 사회화시키는 노동력의 세대적 재생산을 담당한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모든 국민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국민은 생활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할 권리가 있으므로, 만일 어떤 가정이 노동력을 재생산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갖지 못했다면 국가는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즉, 저소득 계층 등의 요보호가정이거나 가정문제로 해체될 위기에 처한 위기가정에 대해 국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족이나 가정에 관한 정책들은 비체계적이고 장기적·종합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었으며, 가족관련 정책들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후 치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즉 가족정책의 주 지원대상은 가족을 통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으로 장애인, 요보호 노인, 요보호아동, 요보호여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이루지지 않았다(장혜경 외, 2002, 3-5).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생활공동체인 가정을 단위로,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한다(법 제21조). 이제는 우리나라도 가정, 가족문제를 파악하는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개별 복지법을 통해 개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요보호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생활의 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⁶⁾.

3.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구현

건강한 가정은 가족 내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평등한 관계가 바탕이 될 때 열린 대화가 가능

하며, 가족역할을 공유할 뿐 아니라 가족 간 휴식과 여가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럴 때 가정의 건강성은 증진된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생활의 양성평등 정신(헌법 제36조)⁷⁾에 따라 본 법의 총칙에서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본 법 제5조) 있다. 이 법에서 지향하는 가족가치는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 운영에 가족원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본 법 제7조). 또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 법 제22조). 구체적으로 법 제26조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평등가족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강조하고 있다.

취업여성이 직장가정과 가정을 양립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는 양성평등의 중요한 기준이다. 이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것이다.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투쟁은 이미 한계상황에 달해 있으며, 이는 자녀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들은 직장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 후에도 자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든다. 더욱이 자녀출산이 여성 개인이나 자녀를 가진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노동력의 세대적 재생산을 통해 사회가 유지 발전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것이다. 참고로 2003년 우리나라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율은 22.3%에 머물러 보육수요 대비 이용율인 보육충족률은 60.4%에 불과하다(김승권, 2003). 이러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가장 중요한 여성의 취업중단이유로 작용하고 있다(서지원, 이기영, 1997; 장지연, 김지경, 2001).

본 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아동의 행복추구권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본 법 제22조)고 규정하여, 여성이 직장가정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자녀양육 지원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필요할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권인 재생산권과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조형 외, 2003).

6) 개별대상을 지원하는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가정폭력방지특별법 등은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대상이 요보호가정으로 제한되어 있다.

7)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하략)

헌법에 보장된 노동할 권리(헌법 제32조)⁸⁾와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헌법 제36조)로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뿐 아니라 여성의 보살핌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법 제25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부양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족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의 확대, 그리고 가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본 법 제30조) 하고 있다.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정당한 가치평가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법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가사노동은 가정을 생활단위로 파악할 때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기본으로 가사노동을 통해 노동력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자녀양육이나 가족원에 대한 보살핌 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사회경제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이 가지는 무보수성은 가정 내 여성의 지위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노동시장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인정하여 이를 수행하는 수행자(대부분 여성)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 담당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가사노동을 그들경제에서 벗어나 올바른 복지지표체계에 포함시키게 한다(문숙재 외, 2002). 본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본 법 제5조) 있으며,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본 법 제23조) 있다.

4. 가정의 자립과 협동, 그리고 국가의 지원 강화

자립은 건강성의 또 다른 척도이다. 개인의 자립은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의 균형 있는 발전과 그러한 기회의 보장을 요구한다. 가정의 자립은 가정생활의 주체성 확보와 자생력을 의미한다.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정자원화, 즉 가정이 가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게 하여 가정의 자생력을 살리고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가정은 사회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유기체이므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웃과 함께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정의 건강성은 증진될 것이다. 협동은 자립을 보완하면서,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자원을 공유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고려된다. 여기서 협동은 가정

간의 협력,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시설, 지역사회 다른 체계들과의 협력관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협동이다. 결국 가정이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문화의 창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자립과 협동이 요구된다(조희금 외, 2002, 136-138). 이런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은 가정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한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가가 가정에 대해 일방적인 개입차원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가정이 국가나 사회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 상호작용 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조희금, 2003, 26-27).

자율과 자립성을 가진 능동적 주체로서의 가정의 역할은 본 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의무와 함께 개인 및 가정의 의무와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나타나 있다. 본 법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7조(가족가치)에서 가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제8조(혼인과 출산)에서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9조(가족해체 예방)에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제29조(가정의례)에서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개별가정의 노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가의 지원이 가정의 기능강화를 통해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예컨대, 본 법 제10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할 것을, 제11조에서는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가정생활문화의 발전을 통해(본 법 제30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을 통해(본 법 제31조), 그리고 건강가정교육(본 법 제32조)을 통해 가정이 기능을 강화하고 자립적인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일 국가에게 일방적으로 가정복지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는 가정을 국가에 예측시키고 가정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훼손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법에서는 가정복지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책무를 가짐과 동시에 개별가정 스스로도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함께 언급한다. 이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와 사회 쌍방 간의 상호작용적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협동에 대한 필요는 가정이 가족이기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공동체 내에서 이웃이나 다른 체계와 연대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법은 이 부분에 대해 법 제27조에서 국가는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나아가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본 법 제33조에서도 건강가정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육성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하략)

5.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그 해결과 치료에 많은 시간적 재정적 비용이 들며 완벽한 치료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원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 또는 치료하는 것이 가정의 건강성도 회복하고 가정문제 해결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가정문제를 가진 가정이 아무런 지원도 없이 해체된 후 국가가 개입하여 지원하는 사후 치료적 서비스의 제공은 가정에 속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측면이나 국가의 비용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족정책과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대부분 사후 치료적 지원이 중심이었다. 즉,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후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대책을 강구하였다(김승권, 2004, 24). 그러나 이러한 사후 치료적 지원의 한계는 아무리 그 비용을 증가하여도 가정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없다는데 있다.

가정문제에 관한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은 각 나라들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책들에도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대만은 지자체 가족교육센터에서 미혼남녀가 결혼 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오클라호마주 등에서 결혼준비 및 유지에 관한 법안과 결혼 전 교육 법안을 입법화하였고, 영국도 결혼준비교육 및 이혼 전 상담실시를 의무화했다. 또 캐나다 역시 가족위원회 부서를 법제화하여 가족상담교육을 명문화하고 있다(정현숙, 2003, 2).

건강가정기본법은 문제 예방적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 가정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가족기능약화,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제를 강조하고 있다. 본 법 제32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강가정교육은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의 실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제31조에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혼하려는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이혼가정 자녀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있다.

건강한 문화를 가진 가정은 가정문제의 발생빈도가 낮고,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도 쉬우리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다.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접근을 중시하는 본 법은 제2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한 가정생활문화를 고취하고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정생활문화에는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등이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주5일근무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정친화적인 가족여가문화의 확립은 노동자와 노동자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IV.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다음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를 각 장별로 나누어 그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총 5장의 본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총론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제2장은 건강가정정책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위원회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제3장은 건강가정사업으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다루고 있으며, 제4장은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으로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제5장은 보칙으로 보조금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하위법률 이면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이외에도 27개의 기본법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법의 대상에서 관련이 깊은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과 복지서비스에 관한 내용에서 관련이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등과 비교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제1장 총칙에서 제6장 보칙까지 36조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은 제1장 총칙에서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까지 3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법은 기본법의 성격에 맞도록 주로 선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법의 조항도 짧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은 같은 기본법이라도 제1장 총칙에서 제10장 벌칙까지 76조 이루어져서 다른 기본법에 비해 많은 조문을 담고 있다. 또, 청소년기본법은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등이나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법의 성격을 동시에 담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에 관련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이 법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법적인 성격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체계 면에서 청소년기본법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가정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미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법을 통해 실시 가능하도록 하고, 선언적 의미와 개발되어야 할 사업영역들을 주로 규정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정민자, 2003, 25).

다음에서는 본칙 총 5장 37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장과 조문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1장 총칙

법령의 총칙이란 법령 전체에 관한 원칙적·기본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을 말하며, 총칙적 규정으로서는 목적규정, 정

의규정, 해석규정 등과 이념규정이나 책무규정 등을 둘 수 있으나, 총칙에서 어떤 사항을 규정할 것인가는 실제 법령을 제정할 때 정할 수 있다(박영도, 1997, 122).

건강가정기본법의 제1장 총칙(제1조 - 제12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목적
2. 기본이념
3. 정의
4. 국민의 권리와 의무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가족가치
8. 혼인과 출산
9. 가족해체 예방
10. 지역사회자원 개발 활용
11. 정보제공
12. 가정의 날

1) 제1조(목적)

본 법의 제1조는 입법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적규정에서는 법령과 함께 그 법령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또한 그 법령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박영도, 1997, 122). 본 법에서는 목적에서 건강한 가정의 실현에 국민과 국가가 함께 책임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법이 지향하는 이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함께 국민의 노력도 필요함을 명시한 것이다. 본 법에서는 건강가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강화를 통해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제2조(기본이념)

총칙에서 이념규정이란 법령의 기본원리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법령제정의 이념이나 방침을 강조하려는 경우에 규정된다. 본 법의 제2조에서는 기본이념으로 가정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가정이 우선적으로 구성원 개인의 욕구충족을 할 수 있어야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한 것이나 제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의 개인존중 정신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제3조(정의)

정의규정은 그 법령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중요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또는 그 법령에서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

소 다른 의미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용어의 해석상의 의미를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게 된다(박영도, 1997, 127). 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가족, 가정, 건강가정, 그리고 건강가정 사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법에서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은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가정은 1인의 구성원을 가진 가정이나 비혈연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생활단위란 인간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1인의 가정도 생활이 영위된다고 본다. 건강가정은 구성원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제10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에 따른 것이다.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은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이미 법의 기본이념이나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즉 여성발전기본법은 제2조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제6조 국가 등과 가정에서(①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에서는 가정의 건강성이나 가정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이 어떤 가정을 의미하는지, 또 법에서 구현하고자 한 가정의 건강성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을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정의 건강성증진과 가정기능 강화가 개인의 행복 및 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규정함과 동시에 건강가정사업을 통해 법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에서 책무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 등의 책무를 제시하는 것이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 자에게 일정한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려는 경우에 규정된다(박영도, 1997, 145). 본 법에서는 제4조와 제5조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의 노력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본 법에서는 가정복지의 향상에 1차적인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복지상태를 향유할 국민들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수동적인 복지수급의 대상자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능동적인 주체자임을 강조하여 가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가족원의 성, 가정생활주기, 계층,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모·부자 가정, 미혼모 가정, 1인 가정, 비혈연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을 고려해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③항에서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인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서, 본 법이 지향하는 이념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법의 책무규정은 제1조 목적에서 제시한 내용을 제4조, 제5조에서 명확하게 하고, 이를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7조 가족가치, 제8조 혼인과 출산, 제9조 가족해체 예방에서는 국민과 국가의 책임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또 제10조 지역사회자원 개발 활용과 제11조 정보제공에서는 건강한 가정의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5)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헌법을 제외한 국회에서 제정한 모든 법률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반원칙상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법령전체 또는 법령 중의 일정한 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거나 또는 어떤 범위의 것을 제외하여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규정이다. 본 법에서는 제6조에서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건강가정관련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을 정점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장차 관련법령이 제정됨에 있어 이 체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과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별법의 제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을 먼저 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또 이 내용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법령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은희, 2004, 32).

2. 제2장 건강가정정책

입법형식에서 실제규정이란 법령의 본칙에 규정되는 조문 중 총칙에 이어 규정되는 것으로, 당해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본 법의 실제규정은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각 장별로 살펴본다.

제2장(제13조-제20조) 건강가정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2.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3.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5.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6. 계획수립의 협조
7. 교육·연구의 진흥
8. 실태조사

1) 위원회(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및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화, 전문지식의 도입, 공정성의 확보, 이해의 조정, 각종 행정의 종합조정 등을 위하여 주로 설치된다.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적 기능을 가지는 것과 위원회의 결정 등이 행정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 등 다양하다(박영도, 1997, 235).

본 법의 위원회는 제13조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중앙위원회)와 제14조 시·도 건강가정위원회(시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위원회에는 건강가정실무기획단(제13조 ③항)과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제13조 ④항)하고 있어서 관계부처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강력한 성격을 갖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시책을 심의(제13조 ②항)하고, 시도 위원회는 구체적인 건강가정정책의 실행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제14조 ②항)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3. 건강가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 정책의 평가
5.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기본 법안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9) 제2장 건강가정정책과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을 분리한 것에 대해 조은희(2004, 34)는 법의 구성상 위원회를 다룬 2장과 전담조직을 다룬 4장을 한 장에 구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시·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의 심의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중앙위원회의 구성조직과 운영, 실무기획단의 운영, 시·도위원회의 구성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2) 기본계획(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조정, 협조)

본 법의 제15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기본계획(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제15조 ①항)하고 있다. 또 이 항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제15조 ②항)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5조 ③항)고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정책의 계획 및 실행이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기능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한 사회 통합과 문화 계승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6조 ①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제17조 ①항), 이 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17조 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관계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고(제18조 ①항),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제18조 ②항)을 규정하고 있다.

3) 교육·연구의 진흥과 실태조사

본 법의 제1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①항),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함(②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단순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연구를 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나아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가정문제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매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하도록(제20조 ①항) 규정하고 있다.

3. 제3장 건강가정사업(제21조 -제33조)

제3장 역시 제2장과 마찬가지로 본 법의 실체규정에 해당하는 장이다. 건강가정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의 구현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다른 하나는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법 제21조부터 33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 제22조 자녀양육지원 강화
- 제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
- 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 제25조 가족부양 지원
-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 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 제28조 가정생활문화발전
- 제29조 가정의례
- 제30조 가정봉사원
-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 제32조 건강가정교육
- 제33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1) 가정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정단위 지원 사업

건강가정사업에서는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지원과 이미 발생한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을 가정단위로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에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서 가족을 지지하고 우대하는 가족단위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

정하고,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증진)는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체계적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에서 이혼하고자 하는 가족의 이혼조정 내실화 및 이혼의사가 정해진 가족, 그리고 이혼한 가정에 대해 자녀양육을 비롯한 제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는 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 제32조(건강가정 교육)에서는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을 비롯한 가정생활관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가정기능 강화를 통한 가정의 자립성의 증진은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기초가 된다. 제3장 건강가정사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자녀양육지원 강화), 제25조(가족부양 지원), 제30조(가정봉사원)에서는 자녀를 가진 가정이나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바탕이 되는 가족의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나아가 건강가정사업은 가정이 사회 속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므로 가정 간, 지역사회 내의 협동을 증시한다. 제27조(가족단위 시민적 역할), 제33조(자원봉사 활동 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의 결속과 성장을 위해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또,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정에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가족여가 등 가정생활문화의 기능이다. 즉 가정생활문화의 발전을 통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정적,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법의 제28조(가정생활문화 발전), 제29조(가정의례)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가정생활문화를 고취하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4.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법 제4장은 건강가정의 전담조직에 관한 규정으로 공적전달체계의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제34조)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제35조), 민간단체의 지원(제36조) 등이다.

현재 건강가정에 관련된 사항은 중앙행정기구인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정심의관-인구·가정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의 시행주체가 되는 시·도 및 시·군·구에는 전담부서가 없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련 업무의 효과적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된 제반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 수행은 이 사업에 관한 공적전달체계의 정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본 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는 건강가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 법에서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①항), 센터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⑤항). 또 센터의 건강가정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전문가(건강가정사)를 두며(②항), 이들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가정학·사회복지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규정한다(③항).

건강가정사에 관한 조항은 본 법에서 자력부여법규에 해당하는데, 자격제도란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의 보유를 설정·공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강가정사에 필요한 관련교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건강가정사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제36조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가정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는 공적전달체계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도 가정문제의 예방 및 치료, 가정의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건강가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5. 보칙

보칙은 법령의 본체를 이루는 실제적 규정의 전제로서 그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총칙적 규정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 기술적인 사항을 벌칙에 앞서 규정하는 것이다(박영도, 1997, 240). 본 법의 보칙은 제37조 보조금 등에 관한 것이다. 즉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①항), 이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때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②항,③항)고 규정하고 있다.

6. 부칙

법령의 본칙이 본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이라면 부수적이고 경과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이 부칙이다. 부칙에서는 통상 시행일, 유효기간,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적용례, 경과조치, 기타 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것으로 구성된다.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지금까지 미발동의 상태에 있던 법령의 효력이 현실로 발동하고 그 규율하려는 사실관계에 대해 작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법의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것인데,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다.

V. 결 론

본 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건강가정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이어 법에 나타난 조문을 바탕으로 법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제시하고, 총 5장 37조에 이르는 본칙과 부칙을 가진 법의 체계를 분석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지원은 부족하고 명시적인 가정정책도 없었던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며 이를 위해 국가·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된 법이다. 건강가정이란 건강/비건강의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가정의 건강성을 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또 건강가정이 정상가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동체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법에서는 가정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가정은 생활단위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함한다.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는 기본적인 가치이므로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부양 지원, 가정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의 자립성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을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하여 국가 사회가 일방적인 지원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과 함께 가정 스스로도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본 법은 천명하고 있다. 건강가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지금까지 요보호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과는 그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것이다.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등의 사전적 예방적인 지원을 통해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것은 가정문제의 예방에 기여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인 지원으로 건강가정교육, 가정생활문화 발전 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국가가 앞으로 가정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가정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법의 성공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 법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우리사회 모든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개별법의 제정도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고령사회기본법안(의안번호 170485)',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의안번호 170382)' 등 가정문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정부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가정문제관련 법안들이 건강가정

본법을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가정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4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04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0월 14일

【참 고 문 헌】

- 구부리움·홀스타인 지음. 최연실·조은숙·성미애 옮김(1997). **가족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하우.
- 김승권(2003).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 49-73
- 김승권(200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대한가정학회,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33.
- 김인숙(2003). **가족해체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85-91.
- 대한가정학회(1995). 지방화시대와 가정복지. **대한가정학회 제48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대한가정학회(1996). 21세기를 향한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가정학회 제49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대한가정학회 건강가정육성기법추진위원회(2003). **건강가정육성기법 제정을 위한 Workshop 자료집**.
- 문숙재·윤소영·김은희(2002). 무보수 가사노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0(10), 161-176.
- 박영도(1997).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03.11). **가족지원기본법안(김홍신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 서지연·이기영(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지속 결정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99-109.
- 유영주(1999).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 설정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93-102.
- 유영주(2004a). **새로운 가족학**. 도서출판 신정.
- 유영주(2004b). **한국 건강가정의 의미와 방향 모색**.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UN 세계가정의 해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 윤홍식(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쟁점과 한국가족복지정책의 과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보육업무 이관에 따른 보고·결의대회**.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 71-99.
- 이정전(2003). 가정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경제. **한나라당정책위원회,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39-53.
- 장지연·김지경(2001). **양육형태와 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365-388.

- 장혜경·김혜경·이진숙·김현주·장화경(2002). **외국의 가족정책과 한국의 가족정책 및 전담부서의 체계화 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정민자(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입법 방향과 내용. **한나라당정책위원회,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5-36
- 정현숙(2003). '평등가족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및 법안 마련 연구. **'평등가족기본법'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 조은희(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분석. **한국여성민우회, 건강가정기본법 진단 토론회 자료집**, 19-44
- 조형·강인순·정진주(2003). **여성의 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한울아카데미.
- 조희금(2000).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과제. 21C 가정복지의 전망과 과제. **대구대학교 2000년도 학술세미나 자료집**, 47-63
- 조희금 외(2002). **가정생활복지론**. 도서출판:신정.
- 조희금(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진술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1-31.
- 한국가정관리학회(1998). **가정복지사 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가정관리학회(1999).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5차 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여성민우회(2004). 건강가정 있다/없다. **건강가정기본법 진단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단체연합(2003). **성인지적인 가족정책을 모색한다!. 가족정책토론회 자료집**.
- 日本家政學會家庭經營學部會關東地區(1980). 「新しい家庭生活を考える -家庭生活の健全度調査報告-」. 日本 東京: 樂游書房
- Olson, D. H. & DeFrain, J.(2003). *Marriage and Families-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McGrawhill, Company
- Olson, D. H.(2004). Marital and family strength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KIFS, *Korean International Family strengths Conference*, 23-30.